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89
----------	-------

발의연월일 : 2025. 6. 17.

발의자 : 송재봉 · 허성무 · 이재관  
박해철 · 김영환 · 박지원  
홍기원 · 김우영 · 박용갑  
양부남 · 장종태 · 이병진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위탁 관계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기술자료 유용 소송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존재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위반행위 존재여부 또는 손해액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효적인 증거 조사 절차가 미비하여 침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문가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40조의6 신설 등).
- 나.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음(안 제40조의8 신설).
- 다.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고,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함(안 제40조의9 신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6을 제40조의11로 하고, 제40조의6부터 제40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6(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할 증거 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를 지정하고, 그 전문가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복사, 장치의 작동·계측·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조사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전문가를 소송 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전문가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질문 할 수 있다.

1.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침해행위의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조사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

는지 여부

3. 당사자가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4.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② 법원은 기술의 난이도·복잡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제1항에 따른 전문가로 지정 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 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특허법」 제15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4.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5.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

6.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 하여 당사자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 구체적 범위를 정 하여 당사자 대리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 대리인의 전문가 조사 참

여를 전부 또는 일부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의 대상이 아닌 영업비밀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5항에 따라 자료 제시를 명하는 경우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5항 후단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의 대상이 아닌 제출 대상이 되는 자료에 해당하더라도 조사결과보고서상의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내용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⑧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영업비밀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하여 제출할 것을 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에게 그 삭제 취

지를 알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함께 부여하여야 한다.

⑨ 당사자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 결과보고서를 열람·등사하고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7항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⑪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조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⑫ 법원은 조사의 대상·방법·범위·절차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⑬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 절차에도 활용

할 수 있다.

⑭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⑮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40조의7(전문가의 제척 등) ① 제40조의6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가에게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가는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가는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0조의8(자료보전 명령 및 그 효과)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지 아니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3. 필요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자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자료
4. 자료보전의 사유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앞서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⑤ 자료를 점유, 관리 또는 보관하는 사람이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상대방 당사자는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전

자격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그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명령이 내려진 때의 현상대로 그 자료의 사본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자료를 갱신할 수 있다.

⑦ 자료보전을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소 제기 전 자료보전명령이 있은 후에도 당사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⑨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자료보전명령을 취소하고, 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⑩ 제9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⑪ 제1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제40조의9(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해

서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과 관련하여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람

④ 법원사무관등은 진술인에게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선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다음 각 목에 대한 경고
    - 가. 당사자가 진술인인 경우(법정대리인이 진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 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술인인 경우: 위증의 벌
  5. 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인 진술절차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당사자·대리인·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4. 신문기일 및 장소
  5. 진술인의 인적사항
  6.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 요지
  7. 진술거부 및 선서거부가 있었다면 그 내용 요지
  8.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

## 요지

9.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⑥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내용을 명확히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이의 요지를 진술절차요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상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술인 또는 당사자를 괴롭히거나 진술을 강요하는 때에는 진술인 또는 당사자는 법원에 신문절차의 종료 또는 중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문은 중단된다.
- ⑦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녹음 또는 영상녹화된 진술인에 대한 신문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⑧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2.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진술인으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

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3. 패소판결

4.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5.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⑨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2조,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의 규정을,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제369조 및 제3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진술인은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17조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

⑪ 제4항에 의하여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은 「형법」 제152조, 제153조 및 제155조의 적용을 받는 증인으로 본다.

⑫ 제1항에 따른 신문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의10(변호사 선임 명령) ① 법원은 제40조의9제1항에 따른 신문

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의9제1항에 따른 신문을 허용하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40조의9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제40조의9제1항에 따른 신문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 제40조의9제8항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제40조의11(종전의 제4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0조의6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4. 제40조의9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제40조의6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법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④ 이 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징수한다”를 “징수하고,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부과·징수한다”로 한다.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의6제10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의 임원·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제40조의6(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를 지정하고, 그 전문가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 · 복사, 장치의 작동 · 계측 · 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p> <p>이 경우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조사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전문가를 소송 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전문적인</p>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전문가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1.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침해행위의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조사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 여부

3. 당사자가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4.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② 법원은 기술의 난이도·복잡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제1항에 따른 전문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 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특허법」 제15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4.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5.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

6.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당사자 대리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 대리인의 전문가 조사 참여를 전부 또는 일부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는 조사를 통하여 알

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  
야 한다.

⑤ 법원은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  
자가 소송의 대상이 아닌 영업  
비밀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  
되었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5항에 따라 자료  
제시를 명하는 경우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⑦ 제5항 후단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의 대상이 아닌  
제출 대상이 되는 자료에 해당  
하더라도 조사결과보고서상의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내용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  
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법  
원은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

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⑧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영업비밀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하여 제출할 것을 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에게 그 삭제 취지를 알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함께 부여하여야 한다.

⑨ 당사자는 제4항부터 제8항 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등사하고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7항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

하는 등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는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⑪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조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⑫ 법원은 조사의 대상 · 방법 · 범위 · 절차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⑬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 절차에도 활용할 수 있다.

⑭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⑮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40조의7(전문가의 제척 등) ①  
제40조의6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가에게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가는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가는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신 설>

<신 설>

있다.

제40조의8(자료보전 명령 및 그  
효과)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  
상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  
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으로,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훼손하거나 사용  
할 수 없게 하지 아니하도록 1  
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법원  
은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  
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  
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3. 필요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

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  
하기 어려운 사정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  
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야 한다.

1.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자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자료

4. 자료보전의 사유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보전명령에 앞서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에게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  
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  
의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한 당  
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  
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  
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  
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⑤ 자료를 점유, 관리 또는 보관하는 사람이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상대방 당사자는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그 자료를 쟁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명령이 내려진 때의 현상대로 그 자료의 사본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자료를 쟁신할 수 있다.

⑦ 자료보전을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소 제기 전 자료보전명령이 있은 후에도 당사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상대

방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기간  
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⑨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자료보전명령을 취소  
하고, 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  
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  
할 수 있다.

⑩ 제9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⑪ 제1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  
는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 <신 설>

제40조의9(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  
구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  
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 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

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과 관련하여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람

④ 법원사무관등은 진술인에게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선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다음 각 목에 대한 경고
  - 가. 당사자가 진술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진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 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술인인 경우: 위증의 벌

5. 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인 진술절차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당사자·대리인·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4. 신문기일 및 장소

5. 진술인의 인적사항

6.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 요지

7. 진술거부 및 선서거부가 있었다면 그 내용 요지

8.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 요지

9.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증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  
자는 이의내용을 명확히 진술  
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이  
의 요지를 진술절차요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상  
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술  
인 또는 당사자를 괴롭히거나  
진술을 강요하는 때에는 진술  
인 또는 당사자는 법원에 신문  
절차의 종료 또는 중단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  
이 있을 때까지 신문은 중단된  
다.

⑦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녹음 또는 영상녹화된 진술인  
에 대한 신문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  
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  
용 전체를 기록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  
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⑧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2.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진술인으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3. 패소판결

4.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5.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⑨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법」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2조, 제314조, 제3  
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  
지,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의 규정을,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  
는 경우에는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  
조의2, 제369조 및 제3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  
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진술인은 거부하는 이유  
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진술거부 또  
는 선서거부에 관한 재판을 신  
청할 수 있고, 위 재판에 관하  
여는 「민사소송법」 제317조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

⑪ 제4항에 의하여 선서한 당  
사자 아닌 진술인은 「형법」  
제152조, 제153조 및 제155조의  
적용을 받는 증인으로 본다.

⑫ 제1항에 따른 신문에 관하  
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40조의10(변호사 선임 명령) ①

법원은 제40조의9제1항에 따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의9제1항에 따른 신문을 허용하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40조의9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제40조의9제1항에 따른 신문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 제40조의9제8항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제40조의6(별 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40조의11(별 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  
-----  
-----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2. (생략)

<신설>

<신설>

제41조(별 칙) ① (생략)

<신설>

<신설>

-----  
-----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

1. · 2. (현행과 같음)

3. 제40조의6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4. 제40조의9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1조(별 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제40조의6제4항 후단을 위반

<p><u>&lt;신 설&gt;</u></p> <p><u>② · ③ (생 략)</u></p> <p>제43조(과태료) ① ~ ④ (생 략)</p> <p><u>&lt;신 설&gt;</u></p>	<p><u>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u></p> <p><u>2.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u> <u>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법원에</u> <u>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 감정</u> <u>또는 통역을 한 경우</u></p> <p><u>④ 이 법에 따라 선서한 당사</u> <u>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u> <u>술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u> <u>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u> <u>금에 처한다. 다만, 그 사건의</u> <u>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u> <u>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u> <u>면제할 수 있다.</u></p> <p><u>⑤ · ⑥ (현행 제2항 및 제3항</u> <u>과 같음)</u></p> <p>제43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p> <p><u>⑤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의</u> <u>6제10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u> <u>부 ·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u> <u>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u> <u>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u> <u>부과한다.</u></p> <p><u>1. 법인의 경우: 1억 원 이하</u></p> <p><u>2. 법인의 임원 · 종업원과 그</u> <u>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u></p>
--	---

	<u>만원 이하</u>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 · <u>징수한다.</u></p>	<p>⑥ ----- ----- ----- ----- ----- ----- ----- ----- <u>징수하고,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부과 · 징수한다.</u></p>